

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2. 화순군의회 김성인 의원의 8인
- 나. 회부일자 : '99. 1. 31
- 다. 상정일자 : '99. 1. 31(제82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유인물로 대체
- 나. 제안사유
 -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를 보조감독에 필요하는 읍면장에게 송부
 -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
 - 시공자는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(매물, 콘크리트 타설)은 감독 공무원 및 보조감독, 읍면장의 입회통보
 - 공사착공계 제출시 읍면장의 날인
 - 공사 준공계 제출시 읍면장과 보조감독 공무원의 날인
 -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참가 규제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책임 공사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공사 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한 시공 및 공사 감독이 기대됨.
- 동 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"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 도서와 시방서등 공사내용"을 로 하였는데 공사 "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"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착공후 5일의 공정은 현황 측량 및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임.
- 시방서(제4조 및 제6조)는 설계도서에 포함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.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수정가결"

- "제4조(사업통고 및 보조감독등 임명)①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와 시방서등 공사내용 및 보조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"를
- "제4조(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임명)①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와 공사 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"로 하고,

- '제6조 (시공확인) ③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,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,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'를
- '제6조 (시공확인) ③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,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'로 수정의결

7. 첨 부 :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(수정안)

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(수정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공사보조감독이라함은 공사시공과 정상의 적정시공여부를 현장 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.

제4조(사업통고 및 보조감독등 임명) ①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사와 공사 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즉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읍면장 및 보조 감독의 의무) ①읍면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 현장을 별표 1의 주요 공정 시공시 반드시 현장 지도방문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, 별지 1의 공사 보조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.

③읍면장은 공사감독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공확인) ①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(매몰, 콘크리트타설 기타)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②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읍·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

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,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.

④읍면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.

제7조(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) ①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사실명패)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,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, 감리회사, 공사비,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정당업자제재)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현장확인대상 주요공정

공사종류	주요공정
공통사항	시공측량, 기초처리공, 성토 및 다짐공, 지반조성공
토목공사	철근강공, 조립.배근공, 콘크리트 타설공, 보조기층 및 포장공
건축공사	실내 배관공, 철근가공, 조립.배근공, 콘크리트타설공, 마감처리공, 조경공
기계.전기공사	기자재설비공, 배관설비공

(별표 1)

공사보조 감독일지

일자 : 1999. . .

사업명	확인내용	조치사항	학 인